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2층 그랜드볼룸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나. 의결사항 (**※ 자세한 의안은 첨부 참조**)

1) 제1호 의안: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 제1-2호 의안: 제52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0,000원)

- 제1-3호 의안: 제5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3-1호 의안: 임의적립금 917,695,440,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제1-3-2호 의안: 임의적립금 392,466,962,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1-3-1호 및 제1-3-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 제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3호 의안: 오기 정정의 건

- 제2-4호 의안: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제2-5호 의안: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6호 의안: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7호 의안: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8호 의안: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 제2-9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2-10호 의안: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2-11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2-12호 의안: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2-13호 의안: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제3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3-1-1호 의안: 이사 5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 제3-1-2호 의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제3-2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은 제3-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1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 제3-2-1호 의안: 사내이사 최윤범 선임의 건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제3-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Walter Field McLallen 선임의 건(주주제안_Crucible JV LLC)

- 제3-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6호 의안: 사외이사 오영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7호 의안: 사외이사 최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8호 의안: 사외이사 이선숙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3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6인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은 제3-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2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 제3-3-1호 의안: 사내이사 최윤범 선임의 건

- 제3-3-2호 의안: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제3-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Walter Field McLallen 선임의 건(주주제안_Crucible JV LLC)
- 제3-3-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3-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3-6호 의안: 사외이사 오영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3-7호 의안: 사외이사 최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3-8호 의안: 사외이사 이선숙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보영)

5)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민호)

※ 제5호 의안은 제2-8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2-8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6)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7) 제7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 행사: ①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원본, ② 주주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위임의사 증빙서류, ③ 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의결권 대리행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또는 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reazinc.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 1 고려아연(주) IR팀

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제4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운영 중이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기타

가.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reazinc.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 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주주총회 당일 오전 8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고려아연 주식회사 (직인생략)

※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윤범	1975.03.17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황덕남	1957.05.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Walter Field McLallen	1966.02.21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주주제안_Crucible JV LLC
박병욱	1947.10.11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최연석	1977.05.02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오영	1947.12.1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최병일	1958.10.2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선숙	1966.08.1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총 (8) 명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윤범	고려아연(주) 회장	고려아연(주) 회장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부회장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사장 호주 SMC 대표이사 사장 고려아연(주)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황덕남	변호사 고려아연(주) 이사회 의장	고려아연(주) 사외이사 롯데웰푸드(주) 사외이사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한국법학원 상임이사	해당사항 없음
Walter Field McLallen	Managing Member, Meritage Capital Advisors 공동의장(Co-Chairman), Tomahawk Strategic Solutions 의장(Chairman), Crucible JV LLC & Aggregator	이사(Director), OneSpaWorld Holdings Limited 이사(Director), The Lovesac Company 이사(Director), Timeless Wine Company 공동의장(Co-Chairman), Tomahawk Strategic Solutions 이사(Director), adMarketplace Inc. Managing Member, Meritage Capital Advisors	해당사항 없음
박병욱	회계법인 청 회계사 (주)영풍 사외이사	(주)영풍 사외이사 회계법인 청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최연석	MBK 파트너스 파트너	이글파이브유통화제일차(주) 감사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주) 이사 단원홀딩스(주) 이사 (주)넥스플렉스 이사 동진섬유(주) 이사 경진섬유(주) 이사 연암홀딩스(주) 이사 영화홀딩스(주) 이사 MBK 파트너스	해당사항 없음
오영	회계사, 세무사	법무법인 동북아 고문 (재)함께일하는재단 감사 예일회계법인 대표이사 회장 및 고문	해당사항 없음
최병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해당사항 없음
이선숙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해당사항 없음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윤범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황덕남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Walter Field McLallen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박병욱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최연석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오영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최병일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이선숙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보영	1969.03.2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1) 명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회장 고려아연(주) 사외이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보영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민호	1965.02.07	사외이사	분리선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	고려아연(주) 사외이사 (주)포스코 사외이사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중교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해당사항 없음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민호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1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 <삭제>	<p>제9조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p> <p>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상법 제466조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 6 제4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 제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조 (총회의 소집) ①~⑥ (생략) <신설>	<p>제21조 (총회의 소집)</p> <p>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p>	-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u>증서를</u> 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p>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제27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p>제27조 (의사록)</p> <p>①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본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신설>	<p>부칙</p> <p>(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7항, 제25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제2-3호 의안: 오기 정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신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신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u>발언</u>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u>발언</u>의 시간 및 <u>횟수</u>를 제한할 수 있다.</p>	- 오기 정정
<p>제45조 (정관변경)</p> <p>본 정관의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u>발행주주총수</u>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p>	<p>제45조 (정관변경)</p> <p>본 정관의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u>발행주식총수</u>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p>	

- 제2-4호 의안: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8조 (이사의 수, 임기)</p> <p>① 이사는 3인 이상 19인 이하로 <u>한다</u>.</p> <p>② (생략)</p> <p>③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28조 (이사의 수, 임기)</p> <p>① 이사는 3인 이상 19인 이하로 <u>하고, 독립이사</u>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u>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 개정상법상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 점을 반영,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규정
<p>제29조 (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u>사외이사</u>는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p> <p>②~③ (생략)</p>	<p>제29조 (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u>독립이사</u>는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p> <p>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u>사외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p> <p>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u>독립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 (이사회 의장 및 결의)</p> <p>① 이사회의 의장은 <u>사외이사</u>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33조 (이사회 의장 및 결의)</p> <p>① 이사회의 의장은 <u>독립이사</u>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2 (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4조의2 (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 감사위원회 2.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③ (생략)	1. 감사위원회 2.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③ (생략) ④ <u>사외이사</u>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 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독립이사</u>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 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u>사외이사후보추천회</u>) ① 이사회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u>사외이사후보추천회</u>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의4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 ① 이사회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부칙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 경과조치)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1항, 제31조의3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의3 제4항 및 제34조의4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5호 의안: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31조의4 (이사의 충실 의무) ① <u>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② <u>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관상 명문화

- 제2-6호 의안: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2조의2 (분기배당) ①~② (생략) ③ (생략) 1~3. (생략)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7. (생략) ④~⑤ (생략)	제42조의2 (분기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4~6. (현행 5~7.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분기배당 재원 확보

- 제2-7호 의안: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④ (생략) <신설>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⑥ <u>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u>	- 개정 상법상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반영
<신설>	부칙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경과 조치) 제34조의3 제5항 및 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7호 의안과 제2-8호 의안은 모두 당사 정관 '제34조의3(감사위원회)'을 개정하는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되나, 각 의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신설 및 이동되는 항의 번호(③~⑥항) 및 부칙상 조항의 번호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맞추어 자동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2-8호 의안: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② (생략) <신설>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 ③~④와 같음)	- 개정 상법 반영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1명 → 2명) 반영
③~④ (생략) <신설>	부칙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관련 경과조치) 제34조의3 제3항은 2026년 3월 24일 개최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안건이 승인되는 즉시 시행한다.	

※ 제2-7호 의안과 제2-8호 의안은 모두 당사 정관 '제34조의3(감사위원회)'을 개정하는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되나, 각 의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신설 및 이동되는 항의 번호(③~⑥항) 및 부칙상 조항의 번호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맞추어 자동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2-9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사천팔백만</u> 주로 한다.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사억팔천만</u> 주로 한다.	-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u>오천원</u> 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u>오백원</u> 으로 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u>1,200만</u> 주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u>일억이천만</u> 주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제2-10호 의안: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7조 (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17조 (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u>다만, 이사회는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 제2-11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1조 (총회의 소집)</p> <p>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u>대표이사가</u> 한다. <u>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u></p>	<p>제21조 (총회의 소집)</p> <p>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u>대표집행임원이</u> 한다. <u>대표집행임원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집행임원이 이를 대행한다.</u></p>	<p>- 집행임원제도 도입</p>
<p>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정)</p> <p><u>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본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u></p>	<p>제30조 (대표집행임원 등의 선정)</p> <p>① <u>이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u></p> <p>② <u>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u></p> <p>③ <u>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p> <p>④ <u>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p> <p>⑤ <u>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u></p> <p>⑥ <u>이사회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p>	
<p>제31조 (이사회 및 이사의 직무)</p> <p>① <u>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u></p> <p>② <u>이사회는 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u></p> <p>③ <u>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제한다.</u></p> <p>④ <u>사장, 부사장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31조 (대표집행임원 등의 직무)</p> <p>① <u>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집행임원,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u>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 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31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p> <p>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p> <p>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p> <p>① <u>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u></p>	<p>제31조의3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p> <p>① <u>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u></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p>제40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p> <p>① 본 회사의 <u>대표이사는</u>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p> <p>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u>대표이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대표이사는</u>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④ <u>대표이사는</u>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0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p> <p>① 본 회사의 <u>대표집행임원은</u>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p> <p>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u>대표집행임원</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대표집행임원은</u>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④ <u>대표집행임원은</u>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 제2-12호 의안: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2조 (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u>가 된다.</p> <p>② <u>대표이사</u>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p>	<p>제22조 (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u>이사회 의장</u>이 된다.</p> <p>② <u>이사회 의장</u>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p>	- 주주총회 의장 변경

- 제2-13호 의안: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2조 (이사회 소집)</p> <p>② <u>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u></p>	<p>제32조 (이사회 소집)</p> <p>② <u>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